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

제정 : 1998. 9.30.

4차 개정 : 2019. 4. 1.

제1조(적용범위) 학교법인 배달학원(이하 '법인'이라 한다) 「정관」 제77조(징계 및 재심청구)에 의거 법인, 한라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, 「정관」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(장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중징계 : 파면, 해임, 정직
- 2. 경징계 : 감봉, 견책
- ②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.
-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-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- ⑤ 견책은 전과(前過)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- 제3조(징계사유) 법인 및 대학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 - 1.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법령, 기타 법령과 학교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 - 2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 - 3. 성희롱·성폭력, 기타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 - 4.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때(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제외)
 - 5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쳤을 때
 - 6. 휴직기간 만료 후 2회 이상의 복귀종용 서면통지를 거부할 때
 - 7. 각종 판례에서 징계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4조(징계사유의 시효) ① 「정관」제68조의2(징계사유의 시효)를 준용한다.
 - ② 제1항에서 '징계사유가 발생한 날'이라 함은 다음 사례와 같이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.
 - 1. 교비횡령의 경우 : 횡령행위가 있은 날
 - ③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,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, 이 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위원회에 도달(접수)된 때를 말한다.

제5조(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) 「정관」제68조(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)을 준용한다.

- 제6조(총장의 징계제청) ① 대학직원이 본 규정 제3조(징계사유)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이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제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학에 있으며,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. 또한 해당 직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.
 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제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징계제청서<별지서식 제1호>

- 2. 본 규정 제7조(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) 제1항의 서류
- 제7조(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) ① 징계제청을 받은 이사장은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일반직원징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에 징계의결요구서〈별지서식 제2호〉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
 - 2.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
 - 3.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
 - 4.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
 - 5. 징계혐의자의 이력서
 - 6. 근무성적표
 - ② 징계의결요구서는 언제, 어떻게, 어떠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.
 -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의결요구자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, 징계부가금의 배수(倍數)를 적어야 하며,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로 적을 수 있다.
 - ④ 파면·해임이 예상되는 징계의결요구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, 총장의 제청,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.
 - ⑤ 징계사유가 금전,물품,부동산,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인 경우 및 횡령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⑥ 「정관」제64조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을 준용하여, 이사장은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)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위원회를 둔다.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법인직원의 경우에는 「정관」제59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, 「정관」제60조(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) 및 「정관」제69조(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을 준용한다.
 - ② 대학직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.
 - 1. 직원인사 담당부서장과 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 - 2. 당연직을 포함하여 총장이 추천하는 6명과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- 3. 위원장은 대학측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의 직무는 「정관」제60조(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)을 준용한다.
 - 4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별도로 두되 간사는 직원인사 담당부서의 인사담당자로 하며 투표 및 의결권이 없다.

제10조 〈삭제〉

- 제11조(위원회의 비밀엄수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) ① 「정관」제65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을 준용하여,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〈별지서식 제3호〉에 의하되,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「정관」제65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을 준용하여,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출석통지서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서 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을 할 수 있다.
-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-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,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여행,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-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. 이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.
- ⑥ 「정관」제65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을 준용하여,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⑦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⑧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.
- ⑨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**제13조(위원의 제척 및 기피)** 「정관」제62조(제척사유) 및 「정관」제63조(위원의 기피 등)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위원회의 정계의결) ① 「정관」제61조(징계의결의 기한)을 준용하여, 위원회가 징계의 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- ③「정관」제67조(징계 의결시의 정상참작 등)을 준용하여,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(情狀)을 참작하여, 징계기준〈별표 1〉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〈별표 2〉에 의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.
 - ④ 「정관」제66조(징계의결)을 준용하여,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(主文)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〈별지서식 제4호〉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⑤ 「정관」 제66조(징계의결)을 준용하여,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이사장의 징계집행) 「정관」제66조(징계의결)에 의하여,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징계처분사유결정서〈별지서식 제5호〉를 징계의결서 및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

여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) 「사립학교법」제58조(면직의 사유) 제2항 및 「정관」제45조 (직위해제 및 해임)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.
- 제17조(이사장의 재심사 청구) 이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재심사청 구서〈별지서식 제6호〉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재심사 청구의 취지
 - 2.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
- 제18조(직원의 재심청구 및 절차) ①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직원은 재심청구서〈별지서식 제7호〉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재심청구가 있는 시점에서 재심위원회를 구성 운용한다.
 - ② 재심청구는 징계처분사유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, 재심청구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며,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재심은 원심보다 불리하게 할 수 없고, 재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중단되지 아니한다.
 - ④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 - ⑤ 재심위원회 구성과 의결은 본 규정 제9조(위원회의 구성)과 제14조(위원회의 징계의결) 제 1항에 의한다.
- 제1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.28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4.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서식 제1호〉 (개정 2019.4.1.)

징계제청서(제6조제2항 관련)

인적사항	,1 m	(한글)	소	속				직 위 (직급)	
	성 명	(한자)	생년	월일				재직 기간	~
	주 소								
	① 금	품 및 향응 수수	관계	(□하	당됨, [해도	당없음)		
비위유형		금의 횡령 · 유용	관계						
	③ 성	폭력 비위 관계		(□하	당됨, [해 5	당없음)		
징계사유	*정계/	나유별로 구체적.	으로 2	·] 채					
혐의자의 평소 행실	*근무4	^{실적,} 직무수행능	력. 직·	무수히	대도.	주의	· 경고 혹	될수 등을	구체적으로 기재
근무성적					○○월)		<u></u> 점		
(최근 4년)		년○○월)	점, (〇)○년(○() 월)		점		
징계부가금	대상	여부 (□해당됨,	□해당	당 없음	글)				
징계제청자 의견	*징계의	기 종류와 양을 기	기재						
위와 같이	징계-	를 제청합니다.							
		2	ا 20	년	월		일		
			한리	대학.	교 총정	(인))		
학교법인 1	배달학·	원 이사장 귀하							

〈별지서식 제2호〉 (개정 2019.4.1.)

장계의결 요구서(제7조제1항 관련)

		(한글)	소 속			직 위 (직급)			
인적사항	성 명	(한자)	생년월일			재직 기간	~		
	주 소								
징계사유									
징계의결 요구자 의견									
위와 같이	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.								
	20 년 월 일								
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(인)									
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			

〈별지서식 제3호〉

출 석 통 지 서(제12조제1항 관련)

시기 성명		(한글)	소 속				
인적 사항	78 73	(한자)	직위(직급)				
	주 소						
출 석	이 유						
출 석	일 시	년 월 일 /	기 분				
출 석	장 소						
유 의	사 항	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출할 것.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힐 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⁵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	는 때에는 일반 ² 할 것. 고 지정된 일시	직원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			
「일반직원정계위원회 규정」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 20 년 월 일 일반직원정계위원회 위원장 (인)							
		귀하					

-----자르는 선------

진술권 포기서

	성 명	(한글)		소	속			
인적	0 0	(한자)		직위(직	[급)			
사항	주 소							
본인은	본인은 귀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							
		20	년	월	일			
		성명	}		(인)			
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		

〈별지서식 제4호〉

<u>징 계 의 결 서</u>(제14조제4항 관련)

징계혐의자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
인적사항			
의결주문			
	*징계 종류, 징계부가금	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을	기재.
이 유			
	*징계의 원인이 된 사~	일,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	령 명시.
	20 년	월 일	
일반직원	징계위원회		
	위원정	+ (인)
	위 윤	1 (인)
	위원	1 (인)
	위 원	1 (인)
	위 원] (인)

〈별지서식 제5호〉

징계처분사유결정서(제15조 관련)

소	속	직위(직급)	성 명
주문(主文)			
이 유	별첨 징계의결	서 사본과 같음	
	2	날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(인)	} .

참고 :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법인 배달 학원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〈별지서식 제6호〉 (개정 2019.4.1.)

<u> 징계의결 재심사청구서(제17조 관련)</u>

	n m	(한글)	소 속			직 위 (직급)	
인적사항	성 명	(한자)	생년월일			재직 기간	~
	주 소						
징계사유							
징계의결 재심사 요구자 의견							
위와 같이	징계의	결 재심사를 청	구합니다.				
		20	년	월	일		
	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(인)						
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	

〈별지서식 제7호〉

재 심 청 구 서 (제18조제1항 관련)

이정기치	성 명			직 명			소 속	
인적사항	주 소						생년월일	
재심청구								
사 유								
첨부서류								
		서(또는 징기 에 필요한 ⁼		H) 사본				
위와 같이	재심을	청구합니다.						
			20	14	의	٥١		
			20	년	袒	일		
				청.	구인 :			(인)
학교법인	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귀하							

〈별표 1〉

징계기준(제14조제3항 관련)

비위의 정도 및 과실	비위의 <u>도</u>	비위의 도가	비위의 <u>도</u>	비위의 <u></u> 도
	가 무겁고 고의가 있	무렵고 중과 실이거나 비	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	가 가볍고 경 과 실 인 경우
	는 경우	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	나 비위의 도가 가볍	경우
비위의 유형		かたみ	고 중과실 인 경우	
1. 성실의무 위반				
가. 공금횡령·유용 및 업무상 배임	파면	파면-해임	해임	정직-감봉
나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	파면	해임	정직	감봉
다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	파면	해임	정직	감봉-견책
라. 기타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2. 복종의무 위반				
가.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 대한 차질을 준 경우	파면	해임	정직	감봉-견책
나. 기타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3. 직장 이탈 금지 위반				
가. 무단결근	파면	해임	정직-감봉	견책
나. 기타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4. 친절·공정 의무 위반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5. 비밀 엄수 의무 위반				
가. 비밀의 누설·유출	파면	파면-해임	정직	감봉-견책
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	파면-해임	해임	정직	감봉-견책
다.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	파면-해임	정직	정직-감봉	감봉-견책
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리 소 홀 등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마.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6. 청렴의무 위반	파면	파면-해임	정직	감봉
7.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				
가. 성폭력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, 미 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)	파면	파면-해임	해임	정직
나. 그 밖의 성폭력	파면	파면-해임	정직	감봉-견책
다. 성희롱	파면	파면-해임	감봉	감봉-견책
라. 성매매	파면-해임	해임	정직-감봉	견책
마. 기타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8.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	파면-해임	정직	감봉	견책

- # 비고
 제7호가목에서 "업무상 위력 등"이란 업무.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.
 제7호다목에서 "성희롱"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
〈별표 2〉

징계부가금 부과 기준(제14조제3항 관련)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,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	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, 경과실 인 경우
1. 금품 및 향응 수수	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~5배	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~4배	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~3배	금품 및 향 응 수수액의 1~2배
2. 공금 횡령・유용	공금 횡령. 유용액의 3~5배	공금 횡령. 유용액의 2~3배	공금 횡령. 유용액의 2배	공금 횡령. 유용액의 1배

* 비고

- ①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(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, 벌금·변상금·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·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징계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(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선고받은 경우형의 종류, 형량 및 실형,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.